

총 무 치

국무총리지시 제14 호 (720-4335) 1985. 12. 12
[준 영 구]

수신처 수신처 참조

제목 정부행사간소화추진지침

1. 정부에서는 그 동안 각종 행사를 겸소하고 내실있게 거행하기 위하여 정부행사의 간소화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2. 아직도 일부에서는 간소한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소비절약운동에 역행하여 각종 기념식 및 대회와 기공식·준공식 등 을 전시위주로 호화스럽게 거행함으로써 예산·인력·시간의 낭비는 물론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3. 별첨과 같이 정부행사간소화추진지침을 시달하니 정부각급기관 및 정부관리기업체가 솔선하여 이행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산하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정부의 시책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정부행사간소화추진지침 1부. 끝.

14

국 무 총 리

수신처 : 가, 나, 다

정부행사간소화추진지침

1985. 12.

차 례

1. 목 적	3
2. 적용범위	3
3. 기본방향	4
4. 행사간소화 추진지침	4
가. 각종 행사의 억제	4
나. 유사행사의 통폐합	5
다. 지방행사의 축소	6
라. 각종 행사의 민간위임·위탁 확대	6
마. 행사규모의 축소	7
바. 행사경비의 절약	8
사. 기념품 제작 및 경비각출 등 금지	10
아. 국민의 불편초래 사례금지	11
자. 사전절차의 내실화	11
차. 화환 및 선물수수 억제 등	12
5. 행사계획의 사전협의 및 승인제 실시	13
가. 사전협의 및 승인대상 행사의 범위	13
나. 사전협의 및 승인체계·절차	14
6. 행정사항	17

정부행사간소화추진지침

1. 목 적

가. 최근 정부의 각종 행사가 전시위주로 확대 거행되고 일부의 경우 행사본연의 의의보다는 행사규모 등 외형에 치우치고 있고

나. 특히 지방에서는 유사행사의 중복거행과 농번기에 대규모 관주도 행사를 거행하는 사례가 있는 등 국민의 생업에까지 지장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다. 각종 정부행사의 내용·성격·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허례허식과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근검절약을 정부에서부터 출선수범하는 데 있음.

2. 적용범위

가. 법정기념일 행사

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관리기업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각종대회, 기념식 등 모든 행사

3. 기본방향

- 가. 각종 행사의 주기·규모·경비 등을 분석·검토하여 낭비적 요소를 제거한다.
- 나.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이외의 행사 거행을 최대한 억제한다.
- 다. 연례적인 각종 기념행사는 가급적 격년제로 실시하거나 특수년도에만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 라. 국경일행사 이외의 지방행사 거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책홍보를 위한 유사행사는 통폐합하여 거행하도록 한다.
- 마. 각종 기공식 및 준공식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한다.
- 바. 행사간소화촉진을 위해 행사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4. 행사간소화 추진지침

가. 각종 행사의 억제

1) 법정기념일 이외의 기념행사 억제

가)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1,703 호)”에서 정한 법

정기념일 이외의 행사는 최대한 억제한다.

나) 33종의 법정기념일 이외에는 “○○○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새로운 법정기념일의 제정도 계속 억제한다.

(예) : “전기의 날”행사 → “상공의 날”행사로 통합 거행

2) 격년제 행사 거행

연례적인 각종 기념일 행사는 격년제(2년이상 주기)로 실시하거나, 가급적 특수년도(5주년, 10주년 등)에는 확대 실시하고 평년도에는 간략한 기관자체 행사를 거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예) : 국군의 날 행사 : 3년주기로 거행하되 평년도에는 축소 거행
(대규모 시가행진 등 생략)

나. 유사행사의 통폐합

1) 각종 행사의 성격별, 지역별, 시기별 유사행사 및 회의는 실정에 맞게 기관간 협의 하에 통합 조정하여 공동주최할 것

2) 지역 단위행사의 경우 유사행사의 통합 조정기능은 각 직할시 및 도와 시·군이 관장한다.

(예) • 식량증산결의대회, 뭇자리설치연시회 등

→ 식량증산결의대회로 통합

• 각종 시책교육, 안보행사

→ 안보행사시 교육병행

• 시(군)민의 날, 문화제, 체육대회

→ 시(군)민의 날로 통합

• 공장, 직장, 새마을금고대회

→ 새마을 지도자대회로 통합 거행

다. 지방행사의 축소

- 1) 국경일행사 이외의 각종 행사에 있어서는 중앙행사와 병행하여 지방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전국적 행사를 지양토록 하여야 하며,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던 행사라도 지방행사를 폐지하거나 축소토록 한다.
(예) 한글날 기념행사 - 시·군단위 기념식 거행 생략
- 2) 지방행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할시·도 단위 이상만의 행사로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4대 국경일행사 - 직할시·도 단위 이상만의 기념식 거행
- 3) 중앙행사를 지방에서 거행하는 경우 간소화방침에 의거 지방행사계획도 총무처 협의 대상에 포함한다.

라. 각종 행사의 민간위임·위탁 확대

- 1) 각종 기념일에 관한 행사는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에 적극 위탁하고, 민간단체와 공동주관인 경우에는 가급적 민간주도의 행사가 되도록 한다.
(예) ○ 앞으로 위임·위탁 되어야 할 행사
 - 노동문화제 : 노동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자연보호현장선포기념행사
(내무부 →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한국자연보존협회)
- 2) 민간에 이양된 행사에 대하여도 정부의 예산지원 억제 등 사후관리철저로 행사간소화를 적극 유도한다.

마. 행사규모의 축소

1) 대규모 행사장의 사용제한

국경일이나 대통령취임식과 같은 범국민적 행사와 주요 국제적 행사를 제외하고는 행사장소로서 대형회관이나 실내체육관 등 대규모 장소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예) ○ 현충일 행사 :

국립묘지 (7,000 명) → 중앙국립극장 (1,500 명)

○ 철도의 날 행사 :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4,000 명) → 철도청 광장 (800 명)

2) 행사참석인원의 최소화

행사와 관련이 없는 인사를 대거 초청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행사 와 유관한 인사만을 골고루 초청하여 행사의 내실화를 기할 것

3) 인원동원의 금지

행사에 참여하는 행사요원은 행사효과 거양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행사와 무관한 학생·공무원·일반주민을 동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예) 행사의 규모 확대 등 전시효과 거양을 위하여 행사참여 대다수 인원을 공무원·학생·일반주민 등으로 총당하는 사례 금지

4) 각종 행사시 고위공직자 임석제한

각종 행사기행시 필요이상으로 고위공직자를 임석케 함으로써 행사규모가 확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바. 행사경비의 절약

1) 행사용 각종 유인물의 제작기준

행사에 필요한 초청장·승차입장증·안내유인물·입장카드·명찰·봉투·명찰케이스·리본 등은 별첨 1 “각종 행사유인물 제작기준”에 의거 검소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행사장의 검소화

행사장의 장식은 기존시설을 사용토록 하며 식단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단상의 인원을 최대한 축소한다.

3) 행사홍보용 장식물의 설치제한 및 기준

가) 행사홍보용 장식물의 설치는 탑·현판·현수막에 한하며, 아취는 설치할 수 없다(이미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아취 제외). 이 경우 행사홍보용 장식물을 설치할 수 있는 행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국경일 등 법국민적 국가행사
- (2) 법정기념일 행사 및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
- (3) 정부시책의 대국민 계동행사

나) 가) 항에서 열거한 행사를 주관하는 각급 기관의 장이 행사홍보용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각 직할시장 및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행사홍보용 장식물 설치허가기준은 “별첨 2”와 같이 하되 행사의 성격상 초과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총무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 식장주변·연도 등의 청사초롱설치 및 가로기계 양 등은 국경일 행사 및 국빈영접행사, 주요 국제행사 이외에는 일체 금한다.

4) 행사용 애드벌룬의 설치금지 및 포스타·입간판 등의 설치 억제

○ 행사용 애드벌룬의 설치를 금지하며, 표어·포스타·입간판 등의 전시위주 홍보물 설치를 억제하고, TV·라디오·신문 등의 대중 홍보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행사의 의의와 효과를 높이도록 할 것.

5) 화환의 증정 및 꽃장식·장식용 화분의 진열억제

가) 국경일 등 각종 기념행사시의 화환 증정

(1) 현충일을 제외한 각종대회, 기념일 등의 행사장에는 화환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경일 및 현충일에 국립묘지 등에 조화를 증정하는 경우에는 단체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한다.

(예) ○○○지역기관장 일동, 경제인연합회

(3) 국무위원이 화환을 증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일동”의 공동명의로 단일화환을 증정하고, 총무처장관이 이를 각 국무위원에게 통보한다.

- 나) 각급기관의 자체행사시에는 화환을 설치하거나 증정할 수 없다.
- 다) 각종 행사의 거행을 이유로 행사장 주변, 연도 등에 새로이 꽃장식 또는 장식용 화분을 설치할 수 없다.

6) 호화 부대행사의 거행 제한

국경일 등 범국민적 행사와 주요 국제적행사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급만찬·연회 등을 금지하고, 또한 부대행사 장소로서 호텔 등의 호화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전야제·불꽃놀이·시가행진 등 전시위주나 허례허식적인 부대행사는 과감하게 폐지도록 할 것.

사. 기념품 제작 및 경비각출 등 금지

- 1) 행사용 각종기념품을 제작 배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다만, 외국인 초청행사, 경로행사, 어린이 날, 스승의 날, 근로자의 날 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 관련단체나 업체로 하여금 기념품을 제작토록 유도하는 행위
임금
- 2) 행사 명목으로 민간단체나 기업으로부터 경비를 각출하거나 협찬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3) 각종 행사시 수상자에 대한 시상품은 행사 성격에 맞게 실용적이고도 검소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아. 국민의 불편초래 사례 금지

- 1) 각종 행사 거행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경제생활에 불편을 초래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지방의 경우 농번기에는 대규모 행사를 거행함으로써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2) 특히 지역 단위 행사의 경우 지역의 유지급 인사들을 단기에 다수의 행사에 충복 초청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3) 각급 기관의 체육행사 등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기관단체 내부 행사의 경우에도 대민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검소하게 거행한다.

자. 사전절차의 내실화

1) 초청인사의 대기시간 단축

각종 행사를 거행할 때 초청인사를 장시간 식장에 대기토록 하여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므로, 초청인사의 입장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행사시작전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한다.

- (1) 대통령 각하 임석행사 : 1시간 이내
- (2) 국무총리 임석행사 : 30분 이내
- (3) 장관(급) 참석행사 : 20분 이내

2) 초청인사의 대기시간 중에도 별도 유익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대기중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

3) 예행연습의 간소화

예행연습은 행사당일 현장에서 합창단 및 수상자 등 필수요원에 한하여 실시도록 하며, 초청인사에 대하여는 예행연습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안내방송으로 대체)

4) 교통 및 식장안내

각종 행사시에 교통이용 및 주차장 수용계획과 초청인사 식장안내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청인사의 협의를 도모하고, 지역별 초청인사가 개별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야기되는 유류 등 예산낭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집단 수송방안을 수립한다.

차. 화환 및 선물수수 억제 등

1) 각급 기관의 간부급 공직자의 이·취임식은 최대한 검소하게 거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 상호간이나 민간인에게 각종 경조사에 화환·화분·선물의 증정 및 수령을 삼가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축전·조전으로 대체한다.

3) 경조사에 화환 증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 또는 공동명의로 증정하여야 한다.

* 상례·혼례시 화환수령 및 진열기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상례시 : 영전이나 묘소에 10개 이내
- 혼례시 : 예식장에 2개 이내

4) 각급 기관 및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기관장 명의의 각종 기념품 또는 선물 등을 제작·비치하여 내방객 등에게 증정하는 사례를 일체 금한다.

(예) 각종 기념장식품, 방문기념기(페넌트) 등

5) 지방의 경우 지역단위 새마을회관, 기관회의실 또는 강당 등을 각급 기관장이 주례하는 결혼식장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각종 행사 및 의례간소화를 적극 유도한다.

5. 행사계획의 사전협의 및 승인제 실시

가. 사전협의 및 승인대상 행사의 범위

1) 법정기념일 행사

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관리기업체 주관 또는 후원행사로서

가) 관련분야 각계대표가 참석하는 각 시·도 단위규모 이상의 행사

(예) ○ 법정기념일 이외의 각종 행사

○ 정부시책전파를 위한 각종 결의대회, 촉진대회 및 홍보행사

○ 각종 체육대회

○ 대규모 문화행사

나) 각종 국제행사

다) 정부의 차관급이상이 참석하는 기공식·준공식 및 기타 다중집합 시설을 이용하는 각종 행사

- * 지방자치 단체의 시·군·구 이하 기관의 주요행사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차상급 기관이 행사계획 사전승인
- * 각급 기관의 자체 내부행사,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등은 협의 및 승인대상에서 제외하나 정부행사 간소화 추진지침에 의거 간소하게 거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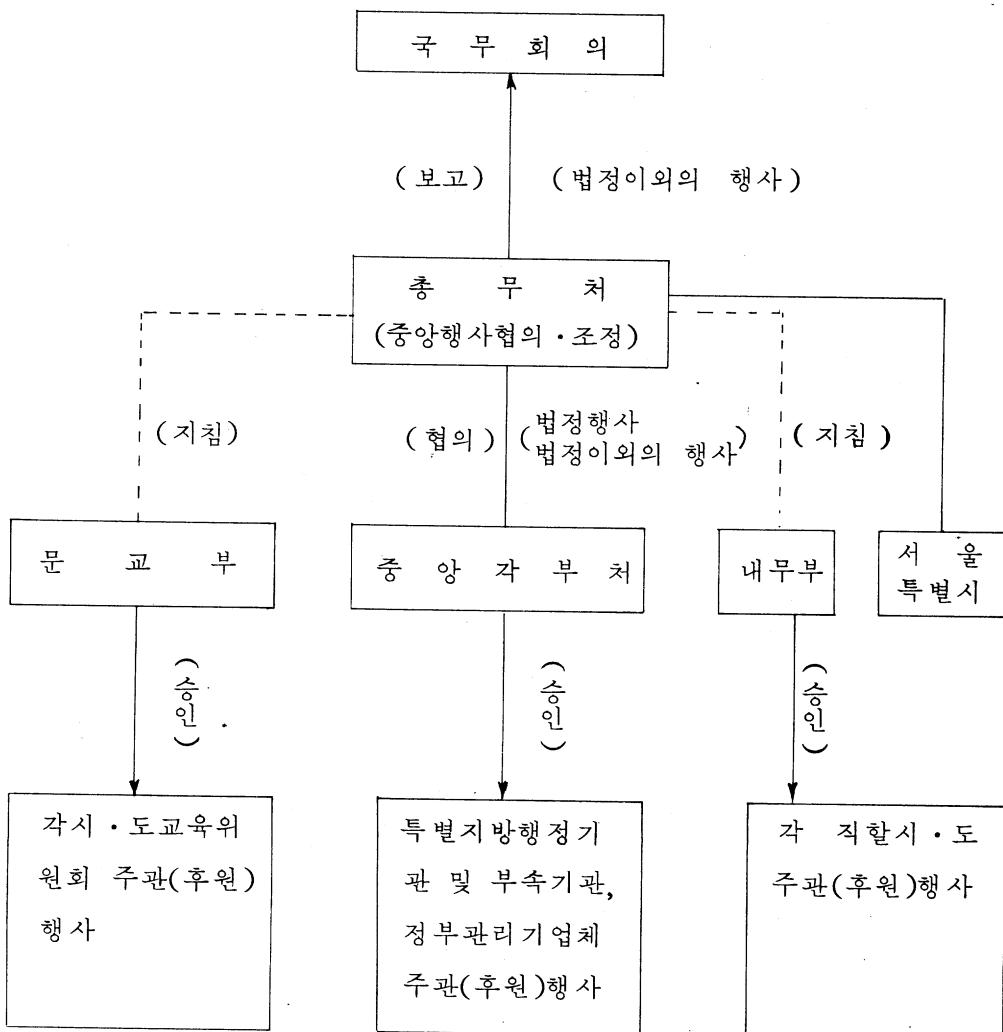
나. 사전협의 및 승인체계·절차

- 1) 국경일행사는 그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후 거행하여야 하며, 국빈영접행사는 별도 계획에 의거 거행한다.
- 2) 법정기념일 행사는 그 행사계획을 행사일 1개월 전까지 행사의 주요내용, 절차, 방법, 규모, 소요경비내역 등 세부행사계획(이하 "세부행사계획"이라 한다)을 총무처장관과 사전협의후 거행한다.
- 3)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장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법정기념일 행사 이외의 행사에 대하여는 세부행사계획을 행사일 1개월 전까지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거행하여야 한다.
- 4) 중앙행정기관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 각 직할시 및 도와 시·도교육위원회, 정부관리기업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각각 내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주무부처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거행한다.

5) 국제행사는 국무총리훈령 제 199호 ('84.5.22)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은 후 거행한다.

6) 각 산하민간단체 주관행사는 주무부처장관이 본 정부행사간소화추
진지침에 준하여 행정 지도한다.

* 행사계획 사전협의 · 승인체계



* 지방자치 단체의 시·군·구 이하 기관의 주요행사에 대해서는 차상

급 기관에서 행사계획 사전승인 (별도기준)

6. 행정사항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은 정부관리기업체 및 산하단체에 정부행사간소화추진지침을 이첩 통보하고, 소관 각종 행사에 대한 행사간소화계획(소속기관 및 정부관리기업체 포함)을 작성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85.12.26 까지 총무처장관 참조 제출한다.
- 나. 내무부장관과 문교부장관은 정부행사간소화추진지침에 의거 지방행사 간소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계획을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거 '85.12.30 까지 총무처장관 참조 제출한다.
- 다. 총무처장관은 정부행사간소화 실천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하며 연 2회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 라. 서울특별시장과 각 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정부행사간소화추진지침에 의거, 홍보탑·현판·현수막 등 각종 행사홍보용 장식물 설치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한다.

(별표 1)

각종행사 유인물 제작기준

구 분	내 용	가 로 (mm)	세 로 (mm)	무 계 (g/m ²)	재 료	비 고
초청장	대 통령명의	180	130	350	금박대지	
	총리 및 장관급 이상 명의	180	130	220	모조지	
	승차입장증	180	130	120	"	
안내 유인물	대	190	260	100	"	
	중	160	220	100	"	
	소	130	180	100	"	
	초청인사 입장카드	70	110	150	"	
	행사요원 입장카드	60	90	150	"	
	명찰	95	65	150	"	
봉투	대	430	300	120	"	
	중	370	240	100	"	
	소	260	160	80	"	
	명찰케이스	96	66	.	.	
	리본	35	170	.	나일론 공단	실크인쇄

(별표 2)

행사홍보용 장식물 설치기준

구 分	종류 및 수량	현 판	홍 보 탑	현 수 막 (프랑카드 포함)
		○ 식장내외	—	—
1. 국 경 일		○ 광화문 ○ 서울시청사	—	—
2. 법 정 기념일	○ 어린이날, 스승 의날, 현충일, 국군의 날	○ 식장내외 ○ 주요지점 (1-3)	—	—
	○ 기타기념일	○ 식장내외	—	—
3. 국제회의, 대회 · 전시행사	○ 대규모국제행사	○ 행사장내외 ○ 공항입구 ○ 숙소	○ 주요지점 (1)	○ 행사관련장소 (5개이내)
	○ 소규모국제행사	○ 행사장내외 ○ 숙소	○ 주요지점 (1)	○ 행사관련장소 (3개이내)
4. 국 내 주요행사	○ 전국체전, 소년체전	○ 행사장내외	○ 주요지점 (1)	○ 행사관련장소 (5개이내)
	○ 정부시책에 의한 주요행사	○ 주요지점 (3-5)		
5. 국 내 전시행사		○ 주요지점 (1)	○ 전시장앞 (1)	

- * 1) 위의 행사용 홍보장식 설치수량은 행사지역(시)내에 한정된 것으로
행사지역 이외의 타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음.
- 2) 중앙행사와 병행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행사는 각 칙하시.
도청소재지에만 위 기준에 의해 설치 가능함.
- 3) 아취는 일체 신설할 수 없음 (단, 기존의 고정시설은 제외)